

영주시 공고 제2024 - 818호

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9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·감면에 대해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수료 감면 대상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·초본을 추가
- 나.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
- 다. 관련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(참조 세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-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 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주 소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

연락처 : (054)639-6451, Fax(054)639-6389

E-mail : shlee1004@korea.kr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유족”을 각각 “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하며, 같은 호부터 제9호 까지 중 “유족”을 각각 “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등본·초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<u>유족</u> 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	2. ----- ----- ----- <u>유족 또는 가족</u> ----- -----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<u>유족</u> 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	3. ----- ----- ----- <u>유족 또는 가족</u> ----- --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<u>유족</u> 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	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----- ----- <u>유족 또는 가족</u> ----- -----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<u>유족</u> 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	7. ----- ----- ----- <u>유족 또는 가족</u> -----

8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 증명 등

9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

10.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8. -----

----- 유족 또는 가족-----

9. -----

----- 유족 또는

가족-----

10. (현행과 같음)

1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

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

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

록등본·초본

②·③ (현행과 같음)